

2022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꿈·재능·SOS-

2022. 3.

한 국 장 학 재 단
복 권 기 금 장 학 부

목 차

- I. 꿈·재능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공고문 1
- II. SOS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공고문 4
- III. 꿈·재능 유형 참고사항 7
- IV. SOS 유형 참고사항 12
- V. 신청 관련 서식 18

- ❶ 담당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서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후 재단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장학 담당교사, 학교 복지사 등
 - ★ 사용자 등록 신청 후 권한 승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권장 ★
- ❷ 꿈·재능·SOS 유형 중 신청 학생의 장학금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여 추천(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추천(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내용 변경 불가 ★
- ❸ 추천(신청)기간
 - 꿈·재능 : `22. 3. 14.(월) 09:00 ~ `22. 4. 7.(목) 18:00
 - SOS(1차) : `22. 3. 14.(월) 09:00 ~ `22. 3. 31.(목) 18:00
 - ★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을 통해 신청 완료되어야 하며, 제출 미완료 시 심사에서 제외 ★

I

꿈·재능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공고문

2022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재능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국내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통해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재능 유형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2. 3. 10.(목)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2. `22년도 꿈·재능 유형 장학생 선발개요

- 유형별 선발인원

유형	선발인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꿈 장학금 (학교 추천 우수자)	1,500명 내외 (중학생 600명, 고등학생 900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	매월 장학금 지급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재능 장학금 (특화 재능 보유자)	500명 내외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배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선발절차 및 일정

구분	장학금 신청	서류 심사	심층 평가	면접 평가	최종 선발
꿈	학교추천 (학교별 2인)	제출 서류 확인·점검 및 최소 자격 심사	'나의 꿈 도전 계획서' 평가	(미 실시)	장학생 선발· 관리위원회 의결
재능	학교추천 (학교별 인원 제한 없음)				
일정	'22. 3. 14.(월) ~ 4. 7.(목) 18:00	'22. 4월	'22. 5월	'22. 5~6월	'22. 6~7월 초

※ 선발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선발 주요내용
☞ 유형별 세부 선발 · 신청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구분		꿈 장학금	재능 장학금
선발인원		• 1,500명(지역별 선발인원 배정) ※ 사업 잔여 예산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500명
선발 자격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중·고교 재학생(중2~고3)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교과	• (성적) D등급 이상(또는 7등급 이내) ※ 직전 학년 이수과목 기준이며, 학년별 세부 기준은 참고2 참조	-
	비교과	• (출결)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 (봉사) 10시간 이상 ※ 코로나19 감안, 한시적 미적용	
추천방식		• 학교 추천(최대 2명)	• 희망자 지원 가능(학교 신청 필요)
제출 서류	신청 시	• 신청인 기본정보, 신청인·보호자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만 14세 미만(‘08년 이후 출생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수급자격 전산 조회 불가 시) 별도 증빙 추가 제출 •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후	• 나의 재능소개서	• 나의 재능소개서
심사 · 선발	서류심사	• 신청시 제출서류 및 신청 대상자 입력정보 확인(재단 실무진)	
	심층평가	• ‘나의 꿈 도전계획서’ 기반 평가(지역별 평가단)	• ‘나의 재능 소개서’ 기반 평가(재능 평가단)
	UCC평가	-	• 학생 제작 영상 평가(분야별 전문가) ※ 대상자 별도 안내
	최종 선발	• 장학생 선발 · 관리위원회 심의 · 의결	
장학금 지원 (지원방식 : 장학금 카드)		• 중학생 월 25만원 / 고등학생 월 35만원 ※ 대학 진학 시 월 45만원 연계 지원(매년 계속장학생 정기·보완 심사 충족 시)	
교육프로그램		• 복꿈성장멘토링(1:1 멘토링),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등	

※ 장학금 신청에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3. 14.(월) ~ '22. 4. 7.(목)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서 신청·접수

□ 신청(추천) 방법 **☞ 신청매뉴얼은 홈페이지 참조('22.3.14.(월) 게시 예정)**

- 소속학교 담당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신청(추천) 학생의 기초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 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장학 담당교사, 학교 복지사 등

〈 온라인 접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 → 사용자 등록 및 신청(교사)* → 접속하기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년도/학기/회차 선택 → 신규 → 장학금 선택(꿈·재능) → 신청서 작성

※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EPKI)이 필요하며, 사용자 권한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만 14세 미만 학생('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 신청(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번) 내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심층평가 통과 후 추가서류 제출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청
 - 특히, 장학금 신청 시 수급자격이 전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공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미비, 자필서명 누락, 신청기간 미준수, 신청정보 오입력, 허위자료 제출 등은 장학생 선발심사 탈락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요망

4. 기타사항

□ 꿈·재능장학금 신청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공지사항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개별문의) 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II

SOS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공고문

2022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렵게 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통해 「2022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2. 3. 10.(목)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 재난·재해·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

2. `22년도 SOS 유형 장학생 선발개요

- 선발인원 : 총 400명 내외 선발
 - 학제별 선발인원은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 ※ 사업 잔여 예산 및 별도 재원 확보 등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동 가능

선발구분	선발인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1차	300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긴급 구난사유 해당 학생	10개월 동안 장학금 30만원 지급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2차	100명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선발절차 및 일정

구분	장학금 신청	서류 심사	심층 평가
SOS	학교추천 (학교별 인원 제한 없음)	제출 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생략
일정	'22. 3. 14.(월) ~ 3. 31.(목) 18:00	'22. 4월	'22. 4월

※ 선발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선발 주요내용

 유형별 세부 선발 · 신청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구분		SOS장학금
선발인원		• (1차) 300명 / (2차) 100명(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배정) ※ 사업 잔여 예산 및 별도 재원 확보 등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선발 자격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중 · 고교 재학생(중2~고3)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p style="text-align: center;"><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p>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급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 포함)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자연 · 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자연 · 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추천방식		• 희망자 지원 가능(학교 신청 필요)
지원유형(택1)		• 유형1(학교장 추천) / 유형2(긴급지원대상자) / 유형3(기타 위기상황의 긴급지원 필요자)
제출 서류	신청 시	• 신청인 기본정보 • 신청인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만 14세 미만(‘08년 이후 출생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평가 후	• SOS 장학금 신청서(총 2쪽 이내) • 긴급구난 증빙서류 ※ 지원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학교장 추천서 또는 긴급지원 대상 증명서 또는 긴급구난 증빙서류(7대 사유)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심사 · 선발	서류심사	•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 대상자 입력정보 확인(재단 실무진)
	심층평가	• ‘SOS장학금 신청서’ 기반 평가(SOS 평가단)
	최종 선발	• 심층평가 통과자 중 추가 서류제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 장학생 확정
장학금 지원 (지원방식 : 장학금 카드)		• 선발 후 총 10개월 간 월 30만원 지원(학제별 균등) ※ 단, 지원기간 중 학업중단 시 지원 종료

※ 장학금 신청에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 '22. 3. 14.(월) 9:00 ~ '22. 3. 31.(목) 18시까지
- 2차 : '22. 8. 1.(월) 9:00 ~ '22. 8. 18.(목) 18시까지

□ 신청(추천) 방법 ☞ 신청매뉴얼은 홈페이지 참조('22.3.14.(월)게시 예정)

- 소속학교 담당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신청(추천) 학생의 기초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 온라인 신청
- *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장학 담당교사, 학교 복지사 등

〈 온라인 접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 → 사용자 등록 및 신청(교사)* → 접속하기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년도/학기/회차 선택 → 신규 → SOS 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

※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EPKI)이 필요하며, 사용자 권한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만 14세 미만 학생('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 신청(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번) 내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심층평가 통과 후 추가서류 제출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지원 유형과 'SOS 장학금 신청서'에 기재된 지원유형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사유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완료 시 최종 선정 가능
- 제출서류 미비, 자필서명 누락, 신청기간 미준수, 신청정보 오입력, 허위자료 제출 등은 장학생 선발심사 탈락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요망

4. 기타사항

□ SOS 장학금 신청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공지사항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개별문의) 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III

꿈 · 재능 유형 참고사항

참고1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지원자(학생) 유의사항**

1. 지원자는 지원자 인적정보, 각종 동의서 및 서류(이하 서식) 등 **지원자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지원자 확인 서명을 한 후** 관련 자료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내려 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조정가능))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 도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십시오.
3. 지원자는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서식8)를 담당 멘토에게 작성 의뢰하십시오.(완료 후 담당 교사에게 제출) ☞ **꿈 또는 재능 장학금 해당**

<참고: 만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관련>

만 14세 미만 학생('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에 법정 대리인 전원의 서명 필수**

○ (예외1)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사망, 이혼, 장기 부재(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등
- ⇒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학생 본인 기준 발급, 친권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인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사망, 이혼에 의한 친권자 기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중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1종 서류 필수 첨부

○ (예외2) 법정대리인이 조손 가정인 경우

- 부모가 모두 부재(사망 등)하여 조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조부 또는 조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총 2부) 서류 필수 첨부

■ **담당교사 유의사항**

1. 지원자가 지원자 기재사항 및 지원자 확인 서약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담당 교사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3. 온라인 등록 시 성적, 봉사활동 실적 및 출결정보는 지원자에 대한 적격기준 판단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멘토링 활동 계획서는 학교장 확인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5. 학생생활기록부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 동 자료는 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참고2 꿈 유형 교과기준

□ 직전 학년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2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3 ~ 고1	직전 학년 평균 D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과목 중 선택
고2 ~ 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III 과목 중 선택

참고3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심층평가 통과 후 제출서류를 구분하며,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구분	제출 서류	제출자	세부내용	비고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시스템 입력사항, 제출 불필요)	서식1
	2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부모)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3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서식2
	4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 대리인 (부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서식3
	5	(꿈) 나의 꿈 도전 소개서 (재능) 나의 재능소개서	학생	학업 및 진로 희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 특화된 본인의 재능 및 향후 목표·계획	서식4 서식5
	6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택 1) ※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분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 서류*	7	멘토링 활동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멘토가 직접 작성한 멘토링 활동 계획 제출 (학교장 직인 포함)	서식8
	8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9	수상실적 증빙	학생	나의 재능소개서에 기재된 수상실적 증빙 (최대 3건)	재능유형만 해당

*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기한 내 서류 제출 완료 필요

참고4

학자금지원시스템 신청 방법

[학자금지원시스템 장학금 신청(추천) 방법]

① 사용자 등록 신청 (담당교사→재단)

▪ (EPKI 기보유자)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https://eduman.kosaf.go.kr>)
-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
- ③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
 - ※ 학교명, 권한 분류 등을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요망
 -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학자금지원시스템 화면]

- (EPKI 미보유자) 담당교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 필요

※ (접속경로)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 인증서발급/관리 > 신청절차 안내 참고

② 신청서류 준비 (학생→담당교사)

- 신청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및 기재사항 점검

신청 시 학생 제출서류

- ① 신청인 기본정보(온라인 입력사항)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학생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 ④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 ⑤ (꿈유형) 나의 꿈 도전계획서 / (재능유형) 나의 재능소개서
 - ※ 저소득가정의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공고일부터 추천일 사이에 발급된 수급자격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③ 학자금지원시스템 정보 입력·서류 제출 (담당교사→재단)

- 담당교사는 신청인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고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업로드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①에서 권한 승인 받은 경우에만 로그인 가능)

② 하단의 접속경로를 따라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재단 홈페이지 게시)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경로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2022년 1학기 1회차' > 신규 선택 > 꿈/재능장학금 선택 후 확인 > 신청서 작성

※ 권한 신청에서 재단 담당자 승인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전자서명인증 또는 권한 승인 절차 사전준비 필요

참고5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관련 사항

□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 등 교육현장의 전문가와 1:1 멘토링)

[교육목표]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교육대상) **중·고 장학생(꿈재능) 의무 참여**
- (교육일정) 연중(학기별 2회 이상, 연간 4회 이상 필수)
- (교육내용) 멘토와 다양한 멘토링 활동(문화활동, 진로·진학 상담, 개인상담 등)

〈 복꿈 성장(1:1) 멘토링 관련 유의사항 〉

- (멘토 지정) 장학금 선발 전, 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멘토의 정보를 입력(필수기입 정보)
 - ※ 장학금 선발 전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서식8) 제출 필요
 - 담임 또는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및 장학생의 재능분야 전문가 등에서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한 결격사유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학교장 확인 필수**)
 - * 장학생의 성장지도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단순 지인은 지양(멘토 자격 결격사유 참고)
 - 멘토는 학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
 - * 멘토 변경 시에도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서식8) 제출 필요
 -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 불성실 활동 등 특이사항 발생에 한하여 학기 중 멘토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학생**(또는 소속학교 관계자)은 **재단에 즉시 연락**하여야 함
- (멘토 지원) 멘토링 활동 지원비*(분기별 10만 원), 멘토 위촉장(교육부 장관 명의) 멘토링 가이드북 등 제공
 - * 멘토 명의 계좌로 지급, 장학생 선발 후 관련 사항 추가 안내 예정
- (활동 점검)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점검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작성

❖ (안전한 멘토링을 위한 소속학교 협조요청) 장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도와주시는 멘토 선생님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 특히, 장학생의 소속 학교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신원이 분명한 멘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장학생의 소속 학교 구성원 지정 권장**)

〈 복꿈 성장(1:1) 멘토링·멘토 자격 결격 사유 〉

- 한국장학재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른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따른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10.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1. 폭력, 경제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채용비위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로서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학생의 가족, 형제
- 중·고등학생
- 사회적 물의(민·형사사건, 성희롱 등)를 일으킨 자
- 현재 정치활동 중이거나 멘토링 활동 기간 중 정치활동 예정 중인 자
- 특정 이념에 치우친 활동을 진행했거나, 예정 중인 자
- 멘토링 활동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권장 멘토링 활동 횟수 미만의 활동을 하였거나, 중도 포기 등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없는 경우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학교장 및 한국장학재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IV

SOS 유형 참고사항

참고1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지원자(학생) 유의사항**

1. 지원자는 지원자 인적정보, 각종 동의서 및 서류(이하 서식) 등 **지원자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지원자 확인 서명을 한 후** 관련 자료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내려 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조정가능))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 도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만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관련>

만 14세 미만 학생('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에 법정 대리인 전원의 서명 필수

○ (예외1)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사망, 이혼, 장기 부재(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등
- ⇒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학생 본인 기준 발급, 친권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인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사망, 이혼에 의한 친권자 기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중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1종 서류 필수 첨부

○ (예외2) 법정대리인이 조손 가정인 경우

- 부모가 모두 부재(사망 등)하여 조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조부 또는 조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총 2부) 서류 필수 첨부

■ **담당교사 유의사항**

1. 지원자가 지원자 기재사항 및 지원자 확인 서약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담당 교사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3. SOS 장학금 신청서(서식 6)는 지원 자격의 판단 자료이므로 긴급구난 사유 유형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유형1(학교장 추천)의 경우 확인란에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심층평가 통과 후 제출하는 학교장 추천서(서식 7)는 지원 자격의 판단 자료이므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학교장 추천 사유 기재 및 날인해 주십시오.
5. 심층평가 통과 후 제출하는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동 자료는 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참고2

SOS 장학금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심층평가 통과 후 제출서류를 구분하며,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시스템 입력사항, 제출 불필요) ※ 담당교사는 기본정보 시스템 입력 후 해당 서류는 제출 불필요(학교 보관)	서식1
	2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서식2
	3 SOS 장학금 신청서	학생 긴급한 위기상황 및 학업의지·계획 구체적 서술	서식6
심층평가 통과 후 제출 서류*	4 긴급구난 증빙서류 (택 1)	학생 학교장 추천서	서식7
		학생 긴급지원 대상 증명서(참고3 참조)	행정복지 센터
		학생 긴급구난 증빙서류(7대 사유*) 중 택 1 * ① 사망·수용, ② 중증질병 등, ③ 방임·유기·학대, ④ 가정 폭력·성폭력, ⑤ 화재·재해, ⑥ 영업 곤란, ⑦ 실직 등	하단의 표 참고
	5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법정 대리인 (부모) 긴급구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학생 본인 외 타인(부모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행정복지 센터
6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 긴급구난 증빙서류(7대 사유) - 상세내용은 [참고 4] 참조 >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가출/수용 증명서 중 택 1
 - 주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중증질병/부상 진단서 중 택 1
 - 가구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방임/유기/학대 증빙서류 중 택 1
 - 가구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증빙서류
-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 거주지의 화재/재해 증명서 중 택 1
 - 거주지 증빙서류(주민등록주소 등본 등)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 증명서 중 택 1 또는 영업곤란 증빙서류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증명서 또는 소득 상실 증빙서류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고3

긴급지원대상 증명서(예시)

제 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성명 :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

4. 긴급지원 종류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계지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지원()

5. 제출용도 :

(용 도)

(제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 목격외 사용 금지

210mm×297mm[안쇄용지(특급) 120g/㎡]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참고4

긴급구난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 (유형3에 해당)

긴급구난사유	제출서류 안내	발급처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사망일자 확인) · 가출 및 행방불명- 행방불명·가출·실종 신고 접수증 · 구금시설 수용-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신청일 기준) - 수용증명서, 치료감호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진단서: 해당 병원 문의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정부24(온라인) · 가출 실종 등 신고 접수증: 경찰서(방문) · 수용증명서: 형사사법포털(온라인) · 치료감호증명서: 법무부민원서비스(온라인)
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 질병 및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입원확인서: 해당 병원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입소 증빙서류 · 전국 아동학대 관련 시설 입소 증빙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 관련 서류: 해당 시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방문)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입소 증빙서류 · 전국 아동학대 관련 시설 입소 증빙서류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 상담 내역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정폭력 사실 확인 · 사건사실 확인자료(신고접수내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 관련 서류: 해당 시설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문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방문)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의 화재/재해- 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등 · 거주지 증빙서류(주민등록주소 등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증명원: 정부24(온라인), 소방서(방문) · 재해 피해사실확인서: 각 지자체(방문)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 증명서 중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 휴업사실증명서, 폐업 증명서 - 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영업곤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포함 * 무급휴직: 1개월 이상 지속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긴급복지지원제도 서식5-1호) * 자영업자: 25% 소득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증명서: 정부24(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 화재증명원: 정부24(온라인), 소방서(방문) - 재해 피해사실확인서: 각 지자체(방문)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각 지자체(방문) ※ 영업곤란(소득감소) 증빙서류 * 무급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긴급구난사유	제출서류 안내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매출액 감소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택스)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화면캡처, 인쇄물 등) ·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 수출실적 증명서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25% 소득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 확인가능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소득감소: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p>※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 	<p>(긴급복지지원제도 서식5-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기관 문의 * 특고·프리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기관 문의
<p>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증명서 중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신청일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일용직일 경우 포함(일용근로내역서 제출 가능자)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고용임금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유선, 온라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유선,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온라인)
<p>* 공통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단,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중증질병 및 부상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까지 유효하게 인정하며, 사망진단서, 법원판결문은 발급일자와 관계없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가구원, 거주지 확인 필요 시 요청) ※ 상기 서류 외 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안내 및 발급처'를 참고하여 긴급구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구비 후 제출 	

※ SOS 장학금의 유형3으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긴급구난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유형 변경 불가

※ 긴급구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이 불가하며, 차순위 대상자에게 기회 부여

참고5

학자금지원시스템 신청 방법

[학자금지원시스템 장학금 신청(추천) 방법]

① 사용자 등록 신청 (담당교사→재단)

▪ (EPKI 기보유자)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 (<https://eduman.kosaf.go.kr>)
-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
- ③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
 - ※ 학교명, 권한 분류 등을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요망
 -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학자금지원시스템 화면]

– (EPKI 미보유자) 담당교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 필요

※ (접속경로)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 인증서발급/관리 > 신청절차 안내 참고

② 신청서류 준비 (학생→담당교사)

- 신청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및 기재사항 점검

신청 시
학생 제출서류

- ① 신청인 기본정보(온라인 입력사항)
- ②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 ③ SOS 장학금 신청서
 - ※ 만 14세 미만('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은 법정 대리인 전원 동의 필요

③ 학자금지원시스템 정보 입력·서류 제출 (담당교사→재단)

- 담당교사는 신청인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고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업로드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①에서 권한 승인 받은 경우에만 로그인 가능)
- ② 하단의 접속경로를 따라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재단 홈페이지 게시)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경로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2022년 1/2학기 1/2회차' > 신규 선택 > SOS 장학금 선택 후 확인 > 신청서 작성

※ 권한 신청에서 재단 담당자 승인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전자서명인증 또는 권한 승인 절차 사전준비 필요

V

신청 관련 서식

서식1 신청인 기본 정보(온라인 입력)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인 기본정보

신청 기초 정보	이름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예시 020401-3123456)						
	학교 및 학년	학교		학년		반		
	학생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보호자 연락처1	(관계:)	보호자 연락처2		(관계:)			
	집 주소	(우편번호:)						
	학 교 주 소	(우편번호:)						
꿈· 재능	보호자 정보 (부·모· 법정대리인)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비동거 시 사유			
타기관 지원현황 (이중수혜 확인용)	지원기관	장학금명칭		금액(원)	지원기간(학기단위)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법정 차상위가정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유형1(학교장 추천) <input type="checkbox"/> 유형2(긴급지원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유형3(7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 필요자)							
SOS	비고	즉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공고일부터 증빙서류제출일					※ 7대 긴급지원 사유 해당자(개별신청) ① 주소득자 사망 등 / ② 중증질병·부상 ③ 방임/유기/학대 / ④ 가정폭력·성폭력 ⑤ 거주지 화재/재해 / ⑥ 주부소득자 휴업 등 ⑦ 주부소득자 실직	

※ 학생은 위 내용을 작성 후 담당교사에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위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 의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초·중·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초·중등·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 휴학 등 포함)을 위한 신청, 장학금 계속 지원 확인,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는데 동의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확인, 장학대상자 선발·지원·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및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을 위한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체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재단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및 국가 장학사업

	<p>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좌정보, 보호자 정보 등), 졸업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사항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 동의여부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교육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담당 멘토 ■ 업무위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진로 컨설팅 대행업체, 멘토링 캠프(콘서트)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장학증서 수여식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UCC 심사 관련 사이트 구축·운영업체 등 ▶ 재단은 위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p>제공·조회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 등을 위한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로 컨설팅 업무, 멘토링 캠프(콘서트) 운영, 장학증서 수여식 운영, 조사·연구, 상담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p>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재단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획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p>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p>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p>제공·조회 동의 여부</p>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p>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감경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 ①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 본인은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③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 ④ 본인은 학교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⑤ 본인은 장학생으로서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⑥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활동보고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본인은 장학금 카드가 학업장려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부정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본인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대학생 진학 시 중고교생 장학생을 위한 멘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장학금 지원 제한 및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 ①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 계획상 장학생 자격 박탈, 중단, 유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변동됨에 동의합니다.
- ②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다.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상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전부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년 월 일 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동의 절차 미완료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최종 선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학자금 신청인(중고교생)의 학자금지원(장학금지급, 이하 '학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본인('본인'이라함은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50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을 위해 장학재단법 제16조 및 제50조의2, 제50조의4에 따라 본인의 학자금지원 자격요건 파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초·중·등·고등학교기관에 재학(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 휴학 등 포함)을 위한 신청, 장학생 계속지원 확인,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익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의사결정 여부 판단 ■ 학자금지원 신청자와의 가족관계(부, 모, 법정대리인) 확인 ■ 학자금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의 저소득자격정보 파악 및 계속적 학자금지원을 위한 변동정보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업관리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수집, 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자우편 주소, 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정보,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 경감대상, 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외에 학자금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항 등
보유, 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학자금 신청·선정·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각호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그 산하기관)
--------	---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별정우 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포함) ■ 사회보장정보원 ■ 업무위탁업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DM 발송업체, 조사전문업체, 멘토링 캠프(콘서트) 수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보험업체, 장학증서 수여식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연구용역수행자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 조회의 목적	■ 학자금 신청자 및 가구원(부,모)의 자격을 파악하여 학자금 지원(계속적 학자금지원 포함)을 위한 심사 거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업관리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업무 수행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가구원정보,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격정보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 등, 차상위자격(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 건강대상,우선돌봄)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등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았자의 개인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이 용)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 장학재단법 제16조,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재단의 조회 결과 신청인의 학자금지원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학자금지원 까지 또는 신청인이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졸업할 때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 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전자정부법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함)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위 사 동의하셔야만 학자금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 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 신청·선정·지급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 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 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 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	

서식4

(꿈장학금) 나의 꿈 도전 계획서(학업계획서)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 학생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학교		
학년		반			
장래희망		특이사항(해당시)	(예시: 다문화, 탈북, 한부모 가족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1. 블라인드 평가

-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사전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별 평가단(교원, 복지·인재개발전문가,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역량,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꿈 도전계획서(학업계획서)」는 **총 3페이지 이내로 반드시 장학금 신청자 본인(학생)이 직접 작성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허위 또는 과장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3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1. 학업 또는 관심(흥미) 분야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느낀점), 목표, 장래희망 등과 함께, 향후 장학생으로서의 학업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또는 일상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의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등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5

(재능 장학금) 나의 재능 소개서

나의 재능소개서

□ 학생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학교	
학년	반			
장래희망	특이사항(해당시)		(예시: 다문화, 탈북, 한부모 가족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등

1. 블라인드 평가

-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사전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재능 평가단(교원, 복지·인재개발전문가,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역량,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자는 본인의 재능유형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하며, 「나의 재능소개서(학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재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기술합니다. **심층평가 및 UCC평가는 본인이 신청한 재능유형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신청한 재능분야와 「나의 재능소개서(학업계획서)」가 불일치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상실적의 기술 및 증빙서류 제출

- 수상실적 사항은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본인의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 「나의 재능소개서(학업계획서)」에 기재 시에는 반드시 기재한 실적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상실적은 중학교 이후 실적만 인정**되며, 수상실적의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서 원본대조를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행기관에서 원본대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학교에서 원본대조를 받고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3.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나의 재능소개서(학업계획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재능소개서(학업계획서)」는 **총 3페이지 이내로 반드시 장학금 신청자 본인(학생)이 직접 작성**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허위 또는 과장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작성] 재능유형(택1, 중복선택 불가)

※ 총 7개 유형(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4개 세부유형), 기타) 중 1개 유형만 선택 가능

재능 유형	<input type="checkbox"/> 인문사회(어학, 역사, 작문 등)
	<input type="checkbox"/> 이공계(수학, 공학, 컴퓨터, 화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 농학, 해양학 등)
	<input type="checkbox"/> 예체능(음악) / <input type="checkbox"/> 예체능(미술·디자인) / <input type="checkbox"/> 예체능(체육·무용) / <input type="checkbox"/> 예체능(방송·영화·연극)
	<input type="checkbox"/> 기타(요리, 미용, 게임 등 분류가 어려운 경우)

[선택작성] 재능 분야 공인 수상실적

※ 공인 수상 실적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만 작성하며, 중요도 순으로 최대 3건까지 기재 가능

순번	수상명	등급(순위)	수상일자	수상기관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 총 3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1. 본인의 특화 재능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재능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등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6

(SOS 장학금) SOS 장학금 신청서

SOS 장학금 신청서

학생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학교	
학년		반			

긴급구난 사유 유형 선택

- ① 총 3개의 지원유형 중 1개만 선택
- ② '유형 3' 선택 시에는 긴급구난 세부 사유(①~⑦)를 선택하여야 하며, 장학생 예비합격자는 기한 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유형(택 1)	긴급구난 사유(신청일 기준 위기상황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유형1 (학교장 추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유형3 ①~⑦에 해당)가 발생한 자로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서식7 참조
<input type="checkbox"/> 유형2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참고7 참조
<input type="checkbox"/> 유형3*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참고6 참조

* 학교장 추천 및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니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자는 학교에 개별 신청 필수

학교장 추천

학교장 확인	_____ 학교장(직인)
--------	---------------

※ 유형1을 선택하신 경우, 반드시 확인란에 날인을 찍어 제출 바랍니다.

- 유형1의 경우 학교장 직인은 필수 사항이며, 누락 시에는 서류 심사단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등

1. 평가안내

- 평가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사전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SOS 평가단(교원, 복지·인재개발전문가,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긴급지원의 중요성, 학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SOS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OS장학금 신청서」는 **총 2페이지 이내로 반드시 장학금 신청자 본인(학생)이 직접 작성**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허위 또는 과장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작성 등 기재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양식을 변경하거나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신청 정보 오입력, 허위입력 등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OS장학금은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긴급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이후 **예비 합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재단에서 안내한 기한 내 추가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서류미비 및 누락 포함)시에는 장학생 최종 선발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추가 서류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 추가 서류제출 및 기타 안내는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진행되오니, 신청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학생)에게 있습니다.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1. 본인이 처한 위기사항, 긴급한 정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 학업계획, 향후 진로 및 비전 등과 함께 향후 장학생으로서의 학업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7

(SOS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

지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학교		
학년		반			

긴급구난 사유 유형

※ (작성 시 설명 문구 삭제)

- 하단의 긴급구난 세부 사유(①~⑦) 중 해당되는 유형 택 1하여 기재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 긴급구난 사유에 따라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유형 장학생으로 상기 학생을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_____학교장(직인)

- ※ 학교장 추천서 기재내용과 실제 시스템에 입력된 지원사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 제출 시에는 반드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서식8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정보공개동의서(멘토용)

2022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꿈·재능 장학금 지원자용

멘토링 활동 계획서

학생	성명		학교	
멘토	성명		소속기관	직위
	휴대전화	() -	이메일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교류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멘토 신청 동기

-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문구는 삭제요망)
- 이하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멘토링 활동 계획서는 **총 1쪽 이내**로 작성

멘토링 활동 계획

<멘토 확인란> 본인은 위 학생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활동 시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멘토링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멘토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학교장 확인란>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의 자격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음과 위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_____ 학교장(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3.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공 개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및 경력사항(사진, 이름, 성별, 소속) ■ 멘토링 운영계획서 및 그와 관련된 정보(활동내용, 주제 등)
정 보 공 개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활동 사례 안내 시 멘토 정보 제공(홈페이지, 책자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 소개(멘토링 매뉴얼 등)

※ 귀하는 위의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정보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2. . .

성명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